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71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정연욱・박성훈・이달희

박정하 • 주진우 • 김종양

엄태영 · 정동만 · 이성권

김도읍 • 서지영 • 박상웅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실적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계획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의 고령화가 심화 됨에 따라 일반 전승자들이 무형유산 제도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청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에서 이수자로 한정하는 규정을 폐지하며,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시 전승교육사의 추천권을 추가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지속적 보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제 8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시행계획을 매년"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을 "해당 연도의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국회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이수자 중에서"를 "전승교육사를"로, "전승교육사를 인정할"을 "인정할"로 한다.

제25조제4항 전단 중 "보유단체"를 "전승교육사, 보유단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u>연도</u>별 시행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 다)을----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②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따라 매년-----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국회 보고) 국가유산청 장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 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 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국 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 전승교육사를------를 거쳐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인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보호・육	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보호・육
성) ① ~ ③ (생 략)	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는 국가무형유산의 이	4
수자 중에서 국가무형유산 보	
유자, <u>보유단체</u> 또는 제30조에	<u>전승교육사, 보유단체</u>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